

## 제재내용 공시

1. 조합명 : 서귀포수협

2. 제재조치(요구)일 : 2026. 06. 01.

3. 제재조치(요구)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견책(2명), 경고(3명)

※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재심)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

4. 제재대상 사실

중소형상가 담보대출 심사 소홀 등

- 기업시설자금대출 취급 시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외부감정평가 의뢰 및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처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공동대출 모집 및 취급업무 부적정 등

- 기업시설일반자금 취급시 대출모집 관련 절차 및 수수료 비용 취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으며, 공동대출 관련 심사 업무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법규 >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0조(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45조(승인대출금 업무처리), 제48조의6(업무처리), 제54조(심사사항), 제3편 제8조(신용조사 및 평가 구분), 제17조(신용평가의 구분), 제18조(신용평가방법), 제27조(일반사항), 제38조(소요자금 산출방법), 제39조(소요자금 한도산정에 대한 예외), 제68조(대출관련 수수료), 제357조(모집대상 대출상품), 제381조(공동대출 취급 가능 기관), 제393조(수수료 수취), 제394조(이자 선취 금지), 제397조(사후관리), 제401조(구성원), 제40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편 제1조(관리원칙), 제3조(중점 관리대상), 제5조(채무자 실태조사), <여신서식> 제168호 이자상환력 검토 의견서(법인용)
- 「상호금융 채권관리업무방법」 제6장 제264조(경매참가 방침 결정방법), 제8장 제376조(비업무용 자산의 의의), 제377조(비업무용자산의 취득 억제), 제388조(감정평가 실시), 제390조(처분원칙, 처분방법), 제395조(공매방법)
- 「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 제23조(외부감정평가 의뢰방법), <별표1-1> 외부감정평가 의뢰 기준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장 제3조
- 「회원조합 감사규정」 제31조(직원에 대한 제재)
-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12조(징계양정기준) <별표>징계양정기준표